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건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072

발의연월일: 2025. 2. 11.

발 의 자:이건태・이종욱・허 영

이개호・조인철・박수현

양문석 • 문진석 • 황 희

위성곤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6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 제 제도는 2017년 시행 이래 일몰기한이 3년마다 연장되고 있으며 현 재 일몰기한은 2025년 12월 31일임.

영상콘텐츠 제작 단계는 크게 제작준비-촬영제작-후반제작의 3단계로 구성되고 유통과 정산까지 수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바, '3년 일몰제'는 동 제도가 추구하는 영상콘텐츠 제작비 지원 및 투자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콘텐츠 산업은 투입대비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 산업이며, 청년 종사자 비율이 타 업종 대비 높아 청년 일자리 창출로 국가 미래 경쟁력을 담보하는 산업인 만큼 산업의 안정적 지 원을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재의 3년 일몰제를 폐지하고 영구 세액공제 제도로 안착시켜 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장려하며 콘텐츠 제작 분야에서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공고히 하고자 함(안 제25조의6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1호"를 "제1호"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편 행 | 개 정 안 |
|----------------------------|-------------------|
|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 |
| 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 | 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u>2025년 1</u> | <u>제1호</u> |
| <u>2월 31일까지 제1호</u> 각 목의 어 | |
|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상콘텐 | |
| 츠(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 | |
| 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 |
|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 | |
| 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 |
|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 | |
| 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 |
|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 |
|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 |
|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
| 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 | |
| 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 | |
| 에서 상영되거나 온라인 동영상 | |
|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 |
|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 |
|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 |
|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